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변경등록	25일 10일
------	------	------	------------	------------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전문분야 종합: [] 종합 설계·사업관리: [] 일반 [] 설계등용역 (□설계등용역 일반*, □측량, □수로조사) [] 건설사업관리 * 설계등용역 일반분야 업무구분 : [] 계획·조사·설계 포함, [] 계획·조사·설계 제외 품질검사: [] 일반 [] 토목 [] 건축 [] 특수* * 품질검사(특수) 세부분야 선택 [] 골재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 철강재 [] 섬유 [] 용접(방사선비파괴검사) [] 용접(초음파비파괴검사) [] 용접(자기비파괴검사) [] 용접(침투비파괴검사) [] 말뚝재하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기술인력 총 명 (특급 : 명, 고급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장비(필요시) 따로 붙임
	시험실(필요시) 소재지 , 면적 m ²

변경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첨부 서류	제출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등록	1.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법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4.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등록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접수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